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행정사 결격사유 확인 관련 자료 조회 요청〉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13423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정부
2. 제출연월일 : 2025. 10. 1.
3. 회부연월일 : 2025. 10.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행정사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행정사의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자료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30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6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행정사의 업무신고) ①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u>에게 대통령령	제10조(행정사의 업무신고) ① ----- ----- ----- ----- <u>시장등</u>----- ----- -----

현행	개정안
으로 정하는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을 갖추어 신고(이하 “행정사업무신고” 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6조는 행정사 자격의 결격사유를 열거하고, 제11조는 행정사 업무를 하려는 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사업무신고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행정사업무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행정사업무신고 기준으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실무교육을 이수했을 것, 행정사 자격이 있을 것, 행정사회에 가입했을 것임.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사 자격을 부여하거나 시장등이 업무신고를 수리 시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바, 실제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 제2차 시험 합격자 결정 전¹⁾에, 시장등은 행정사업무신고 확인증 발급(재발급) 시 결격사유 조회를 진행하고 있음.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행정사 자격증 발급 및 업무신고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 건수는 2022년 10,655건, 2023년 15,242건,

1) 행정안전부는 행정사 자격 부여와 관련해서 행정사 제2차 시험 시행 후 합격자 발표 직전 단계에서 결격사유를 조회하는 것으로 설명함.

2024년 13,120건, 2025년 10월말 기준 16,226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임.

[최근 4년간 행정사 결격사유 조회 건수]

구 분	2025	2024	2023	2022
자격시험 합격예정자	13,860	11,160	13,334	9,282
업무신고 건수	2,366	1,960	1,908	1,373
합 계	16,226	13,120	15,242	10,655

자료 : 행정안전부

한편,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기관등은 각 기관으로부터 행정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법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은 법원(회생법원 포함), 경찰청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해당 여부의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됨.²⁾

하지만,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파면 또는 해임 후 3년 경과 여부에 관한 사항과 등록기준지(구 본적)가 존재하지 않는 외국인³⁾의 경우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어 법원, 중앙

- 2) 「전자정부법」 제36조*는 행정기관등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 이용하여야 하고,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행정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경우 같은 정보의 중복 수집이 금지됨. 또한 같은 법 제34조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구축·운영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3) 외국인의 행정사 업무신고 현황은 2025년 11월말 기준 총 11명(일반행정사 6명, 외국어번역행정사 5명)이고, 최근 5년간 외국인 행정사 자격취득 현황은 2021년 3명, 2022년 및 2023년 각 1명, 2024년 4명, 2025년 5명임.

[최근 5년간 외국인 행정사 자격취득 현황]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인원(명)	3	1	1	4	5	14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등 개별 기관에 자료 조회 요청 시 개인정보 보호 등 이유로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됨.

[행정사 결격사유 조회 방법]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기관	확인방법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법원	행정정보 공통이용 시스템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회생법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경찰청(범죄경력자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공무원 경력 근무기관	각 기관에 공문으로 요청
7. 제30조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시스템

자료 : 행정안전부

이에 개정안은 행정사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조회 요청 및 회신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필요한 입법조치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의 보완이 필요해 보임.

첫째, 범죄경력자료 등 개인정보 조회 요청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안 제6조의2제1항에 개인정보 조회 요청의 목적을 ‘행정사 자격을 부여하려는 경우, 제12조4)에 따른 신고확인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려는 경우’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둘째,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주체는 자신의 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동의 여부 또는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⁵⁾ 등을 가지므로, 이를 반영하여 안 제6조의2제1항 중 “관계기관의 장에게”를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에게”로 자구수정이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339

4) 「행정사법」 제12조(신고확인증의 발급) ① 시장등은 행정사업무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행정사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5)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송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6.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권리